

기고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안전교육 전문가



음주운전 안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최근 영국 작가 마크 포사이스가 저술한 '술에 대한 세계사'는 술과 관련된 인간사를 다루고 있다. 이 책은 급주와 음주 사이의 정치적 행보,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한 번은 맨정신으로 한 번은 만취상태로 회의를 개최한 페르시아인들의 풍습 등 인류역사 속 술에 대해 논하며 색다른 흥미를 유발시킨다. 국내의 한 드라마에서는 '이별이 아무리 아파도 절대 음주운전은 하지 마세요'란 대사가 보여주듯이 사랑과 이별 가운데 술이 등장한다.

이같이 술은 역사 속에서 유혹의 수단이자 불행의 씨앗이었다. 그만큼 인류 역사의 태동 때부터 인간과 함께 존재했고,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영향을 끼쳤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술을 마실까? 통계청 '2018 사회통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

년 동안 술을 한 잔 이상 마신 사람(19세 이상)은 65.2%다. 열 명 중 6.7명이 술을 입에 댔다는 것이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7.8명이, 여자는 5명 정도로 나타났다. 술을 마시는 이유에 대해 국민들은 '사회생활에 필요해서(40.5%)'가 가장 많고, '스트레스 때문에(30.4%)' '마시던 습관 때문에(27.3%)' 등이 뒤를 이었다.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현황에 의하면 2017년 까지 최근 5년간 3,653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매년 평균 600여명에 대한 징계가 반복된 것이다. 부처별로 징계 인원은 교육부가 2,007 명으로 가장 많았다.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청 338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70명, 국세청 230명, 법무부 213명으로 뒤를 잇고 있다. 상대적으로 교육 및 법조계 종사자의

음주운전이 많다는 걸 유추할 수 있다.

음주운전과 관련 이달 25일부터 '윤창호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지난해 9월 25일 부산 해운대에서 고 윤창호 씨가 만취 운전자에게 치어 사망하는 끔찍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만들어진 도로교통법이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한 운전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 음주운전 단속기준에서 면허정지는 알콜농도 0.08%이상 면허취소는 0.08%이상으로 각각 강화됐다. 여기서 알콜농도 0.03%는 소주 한 잔 또는 맥주 한 잔에 들어있는 수치라고 한다. 단 한 잔이라도 마시면 무조건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공직자의 처벌규정도 윤창호법에 맞춰 대폭 강화됐다. 인사혁신처는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종전보다 1단계씩 높였다. 즉 혈중알콜농도가 0.08% 미만이면 정직이나 감봉, 0.08%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강등이나 정직의 처벌을 받는다.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기존 감봉 이상에서 정직 이상에 처해진다.

사망사고라면 해임 이상의 처분을 받고 파면도 가능하다. 기존에는 해임이 최고 징계였다. 해임과 파면은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다. 해임은 퇴직 후 3년간, 파면은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강력한 음주운전 처벌법을 가지고 있는 미국 메릴랜드주의 경우 초범도 6개월 징역이고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최고 15년 징역에 처한다. 이에 비하면 윤창호법은 아직도 형량이 낮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다.

어쨌든 지난해 말부터 윤창호법 제정 및 시행까지 6개월동안 음주운전이 감소했다고 하니 일단 시행해 보고 또 보완하면 될 것이다. 공익캠페인 광고카피로 끝을 맺는다.

음주운전을 안 하는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社說

공무원 면책 요건 간결해야

앞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나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화된다니 기대가 크다.

인사혁신처는 이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5일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기존 4개 요건에서 2개 요건으로 완화했다.

기존에는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절차를 충분히 검토하며 법령상 행정절차와 필요한 보고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하는 등 면책을 받기 위한 요건이 4개나 돼 까다로웠다.

앞으로는 이를 2개 요건으로 완화해 ▲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 중대한 절차상 하자만 없으면 면책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고도의 정책 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 실무직 공무원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징계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고도의 정책 사항은 국정과

제 등 주요 정책 결정 사항이나 여러 부처가 연관돼 정책 조정을 통해 결정된 사항 등을 말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제도·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감사원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요청해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했을 경우에도 징계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음주운전 유형별로 징계기준을 한 단계씩 상향해 음주운전을 하다 처음 적발돼도 '감봉' 이상으로 징계한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최소 정직 처분을 받게 되며, 사망사고가 생겼을 경우엔 공직에서 배제(파면 또는 해임)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공무원들의 복지부흥을 타파하고 업무추진에 있어 적극성을 띠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독자투고

공장화재 미리미리 예방하자

최근 경북 구미의 한 전자부품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길이 주변 공장으로 번지면서 공장 6개동이 불타 137억의 재산피해를 냈다.

공장의 증가는 화재발생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대형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대형화재가 많이 발생하여 재산피해가 다른 장소보다 훨씬 높다.

공장·작업장에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체소방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위소방조직을 편성하고 유사시 각자 맡은바 임무를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공장이나 창고 등에 제품을 적재할 때에는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고 발화위험물질을 따로 분리하여 정

리하며 화재위험지역으로 판단되는 곳은 '화기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방화에 대한 철저한 확인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공장규모에 맞는 소방시설을 철저히 완비하고 그 사용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며 화재시 화재 확대의 최소화를 위하여 내부시설의 단열내장재 처리와 방화구획의 설정 및 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담뱃불로 인한 화재의 예방을 위해서 종업원들의 흡연 장소를 안전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공장화재는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과 생산중단으로 인한 간접적인 손실로 피해를 가중시키므로 위와 같은 예방요령을 숙지해 단 한건의 공장화재가 없기를 바래본다.

한선근 /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위

사전에 예방 가능한 4대 폭력

최근 들어 직장에서는 4대 폭력과 관련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주의 기울이고 있다. 인간관계에서 동료 간의 부드러움과 친근감의 표현은 개인 자유의 선택이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표현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며 꺼려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직장 내에서는 동료 사이에서 가해자 및 피해자로 진행 될 수가 있다. 사전에 4대 폭력에 대하여 예방하고 우리 모두가 직장동료와 함께 어우러져 일할 수 있는 행복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상호간의 솔선 수범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밝고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이 4대 폭력이지만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

될 수 있게 된다. 또한 동료가 이러한 피해를 발생될 경우 나오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되어 무관심하는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어야 한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기를 꺼려하며 개인 프라이버시 노출의 우려 때문에 도움의 손길을 잡아야 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이 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 119 구급대는 가정폭력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

가정폭력 중 이동화대는 가정에서 60%이상 발생하며 구급출동 장소 또한 60% 이상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증상 및 징후를 판단하여 아동학대 의심환자는 이송 가는 병원으로 미리 연지를 하여 우리 아이들이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태연 / 영암119안전센터 소방교



신문으로배우는 오늘의 속담

“고운 사람 미운 데 없고, 미운 사람 고운 데 없다” 한 번 좋게 보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좋게만 보이고 한 번 나쁘게 보면 무엇이나 다 못게만 보인다는 뜻.

등록번호 광주기 0021 (일간)	대표 이사·회장·발행인 김 평 호
호남신문	편집 인·편집 국 장 강 서 원
대표 전화 (062) 229-6000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편집국 (062) 222-5547 팩 스 (062) 222-5548 광고국 (062) 222-5544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날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